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수 의 사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농림축산식품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,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, 진료비용 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·분석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「수의사법」 개정(법률 제18691호, 2022. 1. 4. 공포)에 따라 수술등중대진료에 관한 설명 및 동의, 수술등중대진료에 대한 예상 진료비용 고지 및 그 밖의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위탁(안 제11조의2 신설)

-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전문기관을 시험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업무를 위탁

나.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 및 진료비용 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·분석 업무의 위탁(안 제21조 개정)

-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수의사회에 위탁하고, 동물병원 개설자가 제시한 진료비용 등의 현황에 관한 조사·분석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

다.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위반행위 처분내역 추가(안 별표2 개정)

- 수술등중대진료에 관한 설명 및 동의, 수술등중대진료에 대한 예상 진료비용 고지 및 그 밖의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
조회('22. 2. 4. ~ 2. 14.) 결과를 반영함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수의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2(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위탁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전문 기관을 시험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1.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거나 동물 보건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갖춘 비영리법인
2. 그 밖에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관리 업무를 하는데 적합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기관을 고시 또는 공고해야 한다.

제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연수교육”을 “연수교육 및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법 제20조의3에 따른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진료비용 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·분석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

1.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진료비용 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·분석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거나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춘 비영리법인
2. 「소비자기본법」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
3. 그 밖에 진료비용 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·분석에 관한 업무를 하는데 적합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

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기관을 고시 또는 공고해야 한다.

별표 2 제2호카목부터 하목까지를 각각 타목부터 거목까지로 하고, 같은 호 타목(종전의 카목)의 근거 법조문란 중 “법 제41조제2항제2호의2”를 “법 제41조제2항제2호의3”으로 하며, 같은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카.제13조의2를 위반하여 동물소유자등에게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으로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	법 제41조제2항제2호의2	30	60	90
--	----------------	----	----	----

별표 2 제2호거목 및 너목을 각각 너목 및 더목으로 하고, 같은 호 버목 및 서목을 각각 저목 및 처목으로 하며, 같은 호 머목을 서목으로 하고,

같은 호 더목 및 러목을 각각 러목 및 머목으로 하며, 같은 호 어목을 터목으로 하고, 같은 호 저목(종전의 버목)의 근거 법조문란 중 “법 제41조 제2항제6호의3”을 “법 제41조제2항제6호의5”로 하며, 같은 호에 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버.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수술등중대진료에 대한 예상 진료비용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자	법 제41조제2항제6호의2	30	60	90
---	----------------	----	----	----

별표 2 제2호서목(종전의 머목)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서. 법 제2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고지 ·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	법 제41조제2항제6호의3	30	60	90
--	----------------	----	----	----

별표 2 제2호에 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어. 법 제20조의4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	법 제41조제2항제6호의4	30	60	90
---	----------------	----	----	----

별표 2 제2호에 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커.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	법 제41조제2항제7호의2	30	60	90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	----	----	----

별표 2 제2호저목을 퍼목으로 하고, 같은 란(종전의 저목)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퍼.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4조(법 제16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	법 제41조제2항제9호	50	75	100
--	--------------	----	----	-----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1조의2(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위탁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전문기관을 시험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</u> <u>1.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거나 동물 보건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갖춘 비영리법인</u> <u>2. 그 밖에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관리 업무를 하는데 적합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</u> <u>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기관을 고시 또는 공고해야 한다.</u>
제21조(업무의 위탁)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법 제34조에 따른 수의사	제21조(업무의 위탁) ① ----- ----- -----

의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수
의사회에 위탁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-- 연수교육 및 법 제37조제4항
에 따라 법 제20조의3에 따른
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-
---.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
3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전
문기관 또는 단체에 법 제20조
의4제1항에 따른 진료비용 등의
현황에 대한 조사·분석 업무의
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

1.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설
립된 진료비용 등의 현황에
대한 조사·분석에 관한 전문
적인 능력을 갖추었거나 전문
지식과 기술을 갖춘 비영리법
인

2. 「소비자기본법」 제29조에
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
된 소비자단체

3. 그 밖에 진료비용 등의 현황
에 대한 조사·분석에 관한
업무를 하는데 적합하다고 농
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
기관이나 단체

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

	<u>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기관을 고시 또는 공고해야 한다.</u>
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방역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2522